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5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74523 지방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redacted]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0. 7. 16.

판 결 선 고 2020. 8. 27.

주 문

1. 피고가 2018.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5

가. 원고는 [redacted]외곽순환고속도로 본선 상공형 휴게시설 부지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2014. 4. 17.자 및 2014. 11. 20.자 각 수용재결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된 [redacted]시 [redacted]동 204-11 등 1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승계취득 하였음을 전제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2014. 4. 29.부터 2014. 12. 24.까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175,856,0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12. 27. 피고에게 수용재결에 의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취득세율인 2.8%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2. 원고에게 '대법원 2016두34783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에서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있으나,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및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20-2에 따르면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은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으로 원고에게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1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9.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5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리와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 발생일보다도 훨씬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있었고, 대법원 2016두34783 판결은 새로운 법리를 설시한 판결이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대법원 2016두34783 판결과 같은 해석이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의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인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초과 납부된 세액을 환급해 주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에서의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1천분의 28'로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는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5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은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으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 판결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해석이 대법원 2016두34783 판결에 따른 새로운 해석으로 그 판결 선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산정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지방세기본법 등의 해석 또는 지방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9, 10,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제출한 조세심판원 결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질의 회신 등에 따르면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아 구 지방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5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용재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한 사업시행자들이 지방세법상 승계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오히려 위 2016두34783 판결의 원고인 [redacted]공사는 2015. 1. 12. 그 제1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투었다), ② [redacted]광역시[redacted]군수, [redacted]시장은 이 사건 사유와 같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초과 납부된 세액을 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대법원 2016두34783 판결에 따른 해석을 소급 적용하고 있는 점, ③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상의 관행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이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을 소급 적용하여 과세하려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납세자들로 하여금 예상치 못한 과세 부담을 피하게 하려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새로운 해석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 2016두34783 판결과 같은 해석이 새로운 해석으로서 원고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5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5

별지1

<표2>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현황

(단위 : 원)

소재지, 면적 (시흥시 조남동)	과세표준	합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계	3,822,959,570	175,856,040	152,918,360	15,291,810	7,645,870
204-11 35㎡	17,428,250	801,690	697,130	69,710	34,850
산14-14 87.5㎡	9,498,120	436,900	379,920	37,990	18,990
산14-15 846㎡	91,833,300	4,224,320	3,673,330	367,330	183,660
산17-15 132㎡	22,088,000	1,016,040	883,520	88,350	44,170
산15-6 537㎡	185,644,400	8,539,620	7,425,770	742,570	371,280
산15-12 416㎡					
191 1,568㎡	1,843,288,300	84,791,250	73,731,530	7,373,150	3,686,570
192 644㎡					
192-1 150㎡					
192-2 1,145㎡					
산17-15 44㎡	7,772,600	357,530	310,900	31,090	15,540
198-16 2,015㎡	1,645,406,600	75,688,690	65,816,260	6,581,620	3,290,810
198-18 715㎡					
198-19 16㎡					
198-20 951㎡					
198-21 3,53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5

별지2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5

·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